

Japan Non Tariff Barriers Issue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즉석면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개정



ひと、くらし、みらいのために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지난 2월, 일본 소비자청 즉석면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개정 발표

“즉석면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의 일부 변경(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청 고시 제 1 호) 승인 건”이 2018년 2월 19일 공표되었음.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 표시 기준(2015년 내각부령 제 10호)이 개정되어 모든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음.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신선식품, 혹은 이에 가까운 제품 일부만 원산지의 표시가 의무였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해당 제품 생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즉석면 비롯 모든 가공식품, 가장 높은 비중의 원재료 원산국 표시 필요

대상 원재료가 신선식품인 경우 일본 국내산 제품이면 국내 원산지(도도부현 및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 수입 제품에 있어서는 원산국을 표기해야 함.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 일본 국내산 제품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 또는 "〇〇제조(〇〇製造)(〇〇은 도도부현,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으로 표기하며, 수입제품에 있어서는 "〇〇제조(〇〇은 원산국)"로 표시해야 함. 또한 상기 가공 식품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신선식품의 명칭과 함께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상기 1,2에서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는 대상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함. 또한 3개국 이상인 경우는 대상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개국 이상 표시하고 다른 원산지를 "기타"로 표시할 수 있음

Japan Non Tariff Barriers Issue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개정 사항〉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 식품	
(개정 전) 22식품군과 4품목(수입품 제외)	(개정 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가공 식품(수입품 제외)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원재료	
(개정 전)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원재료와 별도로 정한 4개 품목의 원재료	(개정 후) 원칙적으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 중 상위 1위의 원재료(대상 원재료)
	※ 22식품군은 현행대로 추진. 개별 4품목에 '오니기리' 추가

본 개정건의 유예 기간은 2022년(일본 연호 헤이세이 34년) 3월 31일까지 생산,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즉석면 원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표시하되 그 이후 생산,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즉석면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대로 포장에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개정 내용에 따라 포장 표시 변경해야...

일본 수출을 앞둔 국내 업체는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하기 URL을 통하여 적용일자, 변경 내용 등을 확인 후, 개정 내용에 맞추어 포장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임

▶▶ 즉석면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www.jfftc.org/rule_kiyaku/pdf_kiyaku_hyouji/023.pdf

출처

일본 소비자청, 즉석면 공정 경쟁규약 개정, 18.02.19